

Dentons Lee Newsletter

November 2025

2026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 전면 개정 및 시사점

최근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중재규칙 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KCAB 국제중재규칙을 통해 국제중재를 진행하는 경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제중재심판원 도입

이번 규칙 개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중재인 선임 및 기피, 중재지 결정 및 기타 절차적 사항들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국제중재심판원(이하 '심판원'으로 약칭)을 신설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등 주요 영미법계 중재기관들이 갖추고 있는 이 시스템은 대륙법계 중재기관으로는 처음 도입하는 사례입니다.

2. 중재절차의 신속성·효율성 향상

중재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속절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간이절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1) 간이절차는 분쟁금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중재판정부 구성 후 3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 (2) 신속절차는 분쟁금액이 5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의 사건,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중재판정부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재인 지명 기한도 기존에 비해 대폭 단축시켜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심판원이 단독 중재인 구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인 지명을 15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3인 중재인 구성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인 지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각각 자신의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장 중재인이 15일 이내에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원이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판정서 초안 제출 절차가 도입되어, 중재 판정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최종 심리기일 또는 최종 서면 제출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판정서 초안을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 사무총장 또는 심판원의 검토 후 15 일 이내에 서명된 최종 판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조정 및 조기 결정 절차 도입

중재절차 진행 중에도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조정규칙 또는 상호간에 합의된 조정 절차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구 또는 항변이 유지되기 어렵거나 그 법적 실익이 결여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상대방의 청구 또는 항변에 대해 조기 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결정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나 항변을 조기에 신속히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전자적 절차 진행 방식의 활용 권장

국제중재 분야에서의 디지털화 경향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1) 중재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2) 화상회의 등 전자적 통신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중재 심리 및 회의 개최를 허용하며, (3) 판정서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중재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화 경향을 반영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시사점 및 제언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최근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단순히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는 부분 개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글로벌 중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KCAB 국제중재규칙 하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종전에 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KCAB 국제중재규칙을 통한 분쟁 해결을 희망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Key Contacts



커트 거스트너

외국변호사

kurt.gerstner@dentons.com



김 경 호

변호사

kyoungcho.kim@dentons.com

© 2025 Dentons. Dentons is a global legal practice providing client services worldwide through its member firms and affiliates. This publication is not designed to provide legal or other advice and you should not take, or refrain from taking, action based on its content. Please see [dentons.com](https://www.dentons.com) for Legal Notices.